

창원지방법원 2021. 4. 6 선고 2019가단12349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덕현

피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울

담당변호사 조종만

변론 종결 2021. 3. 9.

판결 선고 2021. 4. 6.

주 문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8. 1.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에게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2018. 3. 8. 접수 제34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하나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특수법인이다.

2) 주식회사 C(이하 'C')은 스텐레스 가공제조 및 도소매업, 철재 및 비철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B은 C의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 내지 대표자인 사내이사이고, 피고는 B과 처남 관계이다.

나.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

1) C은 원고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다음,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았다.

1	2015. 4. 14.(2016. 4. 1.)(2017. 4. 12.)(2018. 4. 12.)	28,800,000(26,400,000)(24,800,000)	2016. 4. 13.(2017. 4. 13.)(2018. 4. 13.)(2019. 4. 12.)	중소기업자금대출
2016. 11. 23.(2017. 11. 20.)	229,500,000	2017. 11. 22.(2018. 11. 21.)	기업구매자금대출	

2)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당시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주요 내용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C과 연대보증인은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지연손해금율은 2016. 2. 1.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다)과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3) C이 2018. 7. 3. 폐업신고를 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등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중소기업은행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9. 28.

중소기업은행에게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과 관련된 대출원리금 256,518,896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그 무렵 원고가 C으로부터 407,796원을 회수하여 중소기업자금대출 관련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대위변제금에 총당함에 따라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대위변제금

잔액은 256,111,100원이 되었고,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111원의

확정지연손해금채권과 452,973원의 법적절차비용이 발생하였다.

다. B의 처분행위

B은 2018. 1. 19. 피고 및 피고의 배우자인 D에게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으로 하여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B은 2018. 3.

8. 피고와 D에게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2018. 3. 8. 접수 제3422호로 별지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여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에는 아직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위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및 그에 따른 연대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불과 약 5개월 남짓 지난 2018. 7. 3.경 C이 폐업신고를 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등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실제로 원고가 2018. 9. 28.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채무자인 B의 무자력 여부

1) 적극재산 갑 5 내지 9, 13, 1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 B의 적극재산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	문경시 E 답 849m ²	160,000,000
2	문경시 F 전 2,162m ²	
3	문경시 G 전 84m ²	
4	문경시 H 답 250m ²	
5	문경시 I 전 1,879m ²	
6	문경시 J 전 70m ²	
7	부산 부산진구 K, L에 있는 M아파트 N호	326,000,000
8	문경시 O 대 315평 (1,041m ²) 중 1/2 지분	7,391,100
9	문경시 P 전 91m ²	1,992,900
소계	495,384,000	

2) 소극재산 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나) 갑 10, 11, 13, 1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 B의 소극재산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	Q 은행	C의 2011. 11. 29.자 대출 관련 Q은행에 대한 한정근보증채무	200,000,000
2	C의 2014. 4. 29.자 대출 관련 연대보증채무	부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구상보증채무	11,663,220
		Q은행에 대한 특정근보증채무	6,601,176
3	중소기업 은행	B의 R 기타일대일시(가계) 채무	40,000,000
4	C의 S 할인어음 연대보증채무	719,749,000	
5	C의 T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연대보증채무	28,016,000	
6	C의 U 기업구매자금대출 연대보증채무	원고에 대한 구상보증채무 (이 사건 피보전채권)	231,363,583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특정근보증채무	38,012,417
7	C의 V 기업구매자금대출 연대보증채무	595,153,000	
8	C의 W 중소기업자금대출 물상보증책임 (적극재산 순번 7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	258,762,000	
9	C의 X 중소기업자금대출 연대보증채무	39,000,000	
10	C의 Y 중소기업자금대출 연대보증채무	원고에 대한 구상보증채무 (이 사건 피보전채권)	25,155,313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특정근보증채무	5,844,687
11		C의 Z 중소기업자금대출 연대보증채무	부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구상보증채무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특정근보증채무	9,000,000
12		C의 AA 중소기업자금대출 연대보증채무	부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구상보증채무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특정근보증채무	27,000,000
소계	2,559,320,396		

3) 결국 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무렵 495,384,000원이었던 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무렵 B의 소극재산은 2,559,320,396원이었으므로,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과 사해의사 유무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인 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 중 1인에 불과한 피고에게 자신의 적극재산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별지 부동산의 1/2 지분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 당시 B은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B의 사해의사도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라.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는 B에게 2018. 1. 25. 3,000만 원, 2018. 2. 5. 5,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는데, 피고와 D는 2018. 1. 19. B으로부터 별지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위 매매대금 중 8,000만 원은 B의 피고에 대한 위 각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는 한편 나머지 잔금 8,000만 원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8. 1. 19. B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B의 다른 일반채권자들을 해치게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이다.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29090 판결 등 참조)

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각 증거, 을 2 내지 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은 C이 2018. 7. 3. 폐업신고를 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등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기 전 약 5개월 정도의 기간 내에 모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그와 같이 짧은 기간 동안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B의 재산을 매수하였다. ② 피고와 B은 처남관계였던

점,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직후인 2018. 2. 19. B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하기도 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무렵 B의 재산상태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한 매매대금 지급경위에 관하여 자신의 B에 대한 8,000만 원의 대여금채권 등으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위 대여금채권과 관련하여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2018. 1. 11.자 차용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채권자는 피고가 아닌 AB이고, 피고가 위 차용증서를 작성한 이후인 2018. 1. 25. 및 2018. 2. 5. AB에게 합계 8,000만 원을 지급한 것만으로 B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일인 2018. 1. 19. B에게 실제로 나머지 잔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마.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B에게 별지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2018. 3. 8. 접수 제34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구민경

별지

1)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53759 판결 등 참조), 관련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갑 13, 14호증)을 참작한다.